

「신용정보업무규정」 및 「신용정보업무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신용정보업무규정」
- 「신용정보업무세칙」

2. 개정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설
- 나.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및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설
- 다. 사전통지 의무 신설
- 라.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규칙 신설
- 마. 규정 상 세부 내용 세칙으로 위임 및 표현 정비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ICT전략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 담당자(이메일) : 주임 김기환(keyhwa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33
- 팩스번호 : 0505-036-1078

붙임 1. 신용정보업무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용정보업무세칙 개정(안) 전문 1부. 끝.